

2022학년도 정시모집(2차 자율모집)

신입생 모집요강

서 정 대 학 교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 총원을 100% 대학

1.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1. 2개 이상의 학과 및 전형에 복수지원이 가능합니다. (원서 개수에 제한 없습니다.)

예시) A과의 일반전형, 농어촌 전형 등 1개 학과의 2개 이상의 전형에 지원 가능

예시) A과의 일반전형 B과 일반전형, C과 일반전형 등 2개 이상의 학과에 지원 가능

예시) A과의 일반전형 B과 농어촌전형, C과 기회균형전형 등 2개 이상의 학과 및 전형에 지원 가능

2. 고교유형(인문계, 특성화(전문계), 검정고시)에 관계없이 일반전형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계열	모집학과	정원내 전형(주간)		정원외 전형(주간)				
		일반 전형	특별 전형	농어촌	기회 균형	전문계고졸 재직자	서해 5도	전문대학, 학사학위
자연 과학	호텔외식조리과	0	0		모집단위 별 입학정원 20% 이내 모집 : 응급,간 호학과제 외 입학금+수 업료 면제		0	0
	반려동물과						0	0
	뷰티아트과	0	0				0	0
보건	응급구조과(3년제)			0			0	
	간호학과(4년제)						0	
인문 사회	경영과	0	0				0	0
	사회복지과	0	0				0	0
	호텔항공관광과	0	0				0	0
	유아교육과(3년제)	0	0				0	0
	상당아동청소년과	0	0				0	0
	글로벌융합복지과	0	0				0	0
공학	게임영상컨텐츠과	0	0				0	0
	자동차과						0	0
	소방안전관리과	0	0				0	0
	글로벌산업공학과	0						
인문	사회복지상담과(성인학습과정)		0					
공학	스마트자동차과(성인학습과정)		0			0		
합 계		0	0		0	0	0	0

※ 수시모집 환불인원은 정시모집에서 총원합니다.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은 수시 환불 및 총원인원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2.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장 소	비 고
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 창구 접수	2022.2.12(토) ~ 2022.2.28(월)	www.jinhakapply.com 입학학사처
합격자발표	개별전화 통보	홈페이지 및 ARS	• 총원이 완료되면 기간이전에 마감 될 수 있습니다.
합격자등록	개별전화 통보	지정 은행	• 개별로 통보 합니다.
첨부서류 제출마감일	원서접수 후 제출	입학학사처	• 신한은행/ 농협 전국지점 • 첨부서류를 확인하여야 합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첨부서류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제출장소	(11429)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서정로 27 서정대학교 입학학사처 앞		

3. 성적반영 : 학과별로 접수순으로 모집

4. 합격자발표 : 합격대상자에게 대학에서 개별 전화 통보(일반전형과 특별전형에 상관없이 접수우선 순위에게 합격자발표)

5. 전형별 지원자격

※ 우리대학교는 모든 선발과정에서 **성별, 신체, 신념, 인종, 장애 등 개인의 사정에 따른 이유로 차별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전 형 구 분		지 원 자 격
정원내 전형	일반전형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22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특별전형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만 30세(1992.02.28일 이전 출생자) 이상 인 자
정원외 특별 전형	농·어촌 특별전형	· 아래 2개 항목 중 1가지 조건에 해당할 경우 농어촌 전형 지원 가능 1) 학생 본인이 농어촌(읍.면)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가 농어촌(읍.면) 지역에 거주한 자(본인과 부모 모두가 주민등록초본 기준으로 재학기간 중 같은 주소에 함께 거주하여야만 농어촌 전형으로 인정함. 거주 주소가 다를 경우 불합격처리) 2) 학생 본인만 농어촌(읍.면)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이 농어촌(읍.면) 지역에 거주한 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지원 자격(농어촌 거주 및 고교재학)을 유지해야하며, 자격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합격이 취소됨
	기회균형 선발전형	· 일반전형 지원자격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별표 1,2참조)
	전문계고졸 재직자전형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산업체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 (근무 년수 3년 기준일은 2022.2.28로 정함)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2 제1호에 따른 일반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시·도 교육감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3) 특성화 고등학교등을 졸업한 사람 4)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 고등학교등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군 의무복무 경력을 재직기간에 포함함.
	서해5도전형	· 서해 5도에서 「민법」 제909조에 따른 친권자 또는 동법 제928조에 따른 후견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서해 5도에 설립된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 또는 서해 5도에 거주하면서 서해 5도에 설립된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으로 졸업(예정)인 자
	전문대학 및 대학졸업자	· 전문대학 졸업(예정자)및 대학 졸업자(예정자) · 4년제 대학 2년 이상 이수한 자로서 70학점 이상 취득자 · 기능대학 이수자 및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각종 학교 수료자

6. 전형별 제출서류

- 1) 제출서류는 원서접수 후 제출(도착)하여야 합니다.
- 2) 2013년 2월 이전 졸업자(2013년 2월 졸업자 포함)는 생활기록부(또는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고등학교 졸업자격 확인을 위한 자료입니다)
- 3) 2014년(2014년 포함) 이전 검정고시 합격자는 성적증명서(또는 합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고등학교 졸업자격 확인을 위한 자료입니다)
- 4) **생활기록부와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대학 성적(졸업)증명서는 학교장 또는 공공기관(동사무소, 시청, 교육청 등) 등의 직인이 날인 되어 있는 경우만 인정합니다.**
- 5) 인터넷접수자는 입학원서를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대학에서 출력합니다)

전 형 구 분			제 출 서 류
정 원 외 특 별 전 형	농· 어촌	유형1 (농어촌 6년과정 이수자)	1)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지원자 명으로 발급) 3) 지원자 주민등록초본 1부(과거 변동주소가 모두 나오도록 발급하여 제출할 것) 4) 부 주민등록초본 1부(과거 변동주소가 모두 나오도록 발급하여 제출할 것) 5) 모 주민등록초본 1부(과거 변동주소가 모두 나오도록 발급하여 제출할 것) 6) 농어촌출신자 전형 지원자격 확인서(별지양식1) ※ 부·모가 사망한 경우 아래 서류 추가 제출 1)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 부·모가 이혼한 경우 아래 서류 추가 제출 1) 혼인관계증명서 1부 2) 지원자의 기본증명서 1부(친권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친권과 양육권이 분리된 경우 친권만 적용함.
		유형2 (농어촌 12년과정 이수자)	1) 지원자 주민등록초본 1부(과거 변동주소가 모두 나오도록 발급하여 제출할 것) 2) 초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3)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4) 농어촌출신자 전형 지원자격 확인서(별지양식1)

전 형 구 분			제 출 서 류
정 원 외 특 별 전 형	기 회 균 형 선 발	기초생활 수급자	1) 기초생활수급자 증빙서류 1부(수급자 성명이 수험생 이름으로 발급) (제출 서류는 반드시 제출일(대학에 서류가 도착한 날)로부터 7일전에 발급받은 것만 유효하며, 기간이 지난서류를 제출하면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불합격처리) (예시:제출일(대학에 서류가 도착한 날)이 1월17일인경우 1월11일부터 1월17일사이에 발급한 서류까지만 인정. 그 이전 날짜로 발급되어진 서류 제출시에는 불합격처리) 2) 1번 서류로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추후 우리대학 요구시 관련 증빙서류 제출
		차상위 계층	1) 별표2의 해당 서류 제출 (제출 서류는 반드시 제출일(대학에 서류가 도착한 날)로부터 7일전에 발급받은 것만 유효하며, 기간이 지난서류를 제출하면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불합격처리) (예시:제출일(대학에 서류가 도착한 날)이 1월17일인경우 1월11일부터 1월17일사이에 발급한 서류까지만 인정. 그 이전 날짜로 발급되어진 서류 제출시에는 불합격처리) 2) 1번 서류로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추후 우리대학 요구시 관련 증빙서류 제출
	전문계고졸 재직자전형		※ 1, 2번 서류 제출 1) 산업체에서 발급하는 재직증명서 2) 해당되는 자격 제출 서류 -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확인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4대보험 가입 확인서) - 4대보험 가입대상 사업체가 아닌 산업체 종사자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농지원부, 어업인허가증명서 등) - 4대보험 미가입 영세창업·자영업자 : 산업체의 사업자등록증과 납세증명서 등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명서 ※ 해당자 선택 제출 서류 - 경력증명서 : 제출하는 재직증명서 재직기간이 3년이 되지 않을 경우 전직장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추가 제출 - 병적증명서 : 현직장 및 전직장을 합산한 재직기간이 3년이 되지 않은 재직자 중 군 의무복무 경력이 있는자에 한하여 제출 ※ 제시한 서류 이외에 다른 공적 증명을 제출한 경우 대체 가능함.
	서해5도전형		1)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각 1부 ① 2022년 2월 고교 졸업예정자 중에서 학생부 온라인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자 (온라인 동의자는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는 필요하지 않음) ②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③ 초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자격요건이 초. 중. 고교과정 거주자) 2) 주민등록등본 1부 3) 지원자 주민등록초본 1부(과거 변동주소가 모두 나오도록 발급하여 제출할 것) 4) 보호자 주민등록초본 1부(과거 변동주소가 모두 나오도록 발급하여 제출할 것)
	전문대학 및 대학졸업자		1) 대학 졸업(수료)증명서 1부 2) 대학 성적증명서 1부

7. 수험생 유의사항

- 1) 수시모집 합격자는 지원하실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입학이 취소됩니다.
- 2) 지원자는 2022.2.28(월)까지 연락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연락두절로 인한 불이익은 우리 대학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3)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학한 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합니다.
- 4) 합격 후에도 입학원서 등 제출서류가 변조되거나 불법한 행위로 합격한 사실이 판명되면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합니다.
- 5) 모든 전형일정 종료 후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 대학에의 이중등록은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입학이 취소됩니다.
- 6) 복수의 학과 및 전형에 입학원서를 제출한 경우도 인정합니다.
- 7) 외국인학생도 정원내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국인 학생들만 별도반 수업을 진행하는 등 유연한 학사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 8) 2019년 교육부 평생학습체제 선정에 따라 인가된 2개 학과(사회복지상담과, 스마트자동차과) 이외에 다른 학과도 확대 운영하고자 특별전형으로 모집하며, 특별전형으로 모집하는 학생들은 평생학습체제 운영과정에서 시행하는 유연한 학사제도 등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 9)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대학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8. 문의전화 : 입학학사처 031-860-5222

<별표1> 차상위계층 인정기준 안내

- 차상위 건강보험본인부담금 경감,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부가급여, 차상위 자활근로자, 한부모가족지원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 또는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의 학생
- ※ 학생이 속한 세대의 구성원 중 한 명이 동 대상자인 경우 이 학생은 차상위계층으로 인정(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동일 세대 여부 확인 필요)

<별표2> 차상위계층 제출 서류

-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주민센터장이 발급하는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한부모가족 확인서,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
- 단,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발행하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및 발급처]

증빙서류	발급처
·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 확인서 - 장애수당 대상자, 장애인연금 대상자, 자활근로자, 한부모가족 확인서 ·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	· 시 · 군 · 구청 · 읍 · 면 · 동주민센터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확인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 ※ 제출 서류는 반드시 제출일(대학에 서류가 도착한 날)로부터 7일전에 발급받은 것만 유효하며, 기간이 지난서류를 제출하면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불합격처리합니다. (예시 : 제출일(대학에 서류가 도착한 날)이 2월21일인 경우 2월15일부터 2월21일사이에 발급한 서류까지만 인정. 그 이전 날짜로 발급되어진 서류 제출시에는 불합격처리)

농어촌출신자 전형 지원자격 확인서							
수험번호			지원학과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지원 자격 확인	유형 구분	해당 유형	지 원 자 격				
	1	()	농어촌지역(읍·면) 소재지 중·고등학교 6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동시에 중·고등학교 6년 재학기간 동안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읍·면) 지역에 거주한 자				
	2	()	농어촌지역(읍·면) 소재지 초·중·고등학교 12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동시에 본인이 농·어촌(읍·면) 지역에 12년간 거주한 자				
재학 사실	학 교 명	소 재 지			재 학 기 간		
	초등학교	도(시)	군	읍(면)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초등학교	도(시)	군	읍(면)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중학교	도(시)	군	읍(면)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중학교	도(시)	군	읍(면)	년 월부터	년 월까지	
	고등학교	도(시)	군	읍(면)	년 월부터	년 월까지	
	고등학교	도(시)	군	읍(면)	년 월부터	년 월까지	
거주 사실	구 분	소 재 지			거 주 기 간		
	지원자	도(시)	군	읍(면)	년 월부터	년 월까지	
		도(시)	군	읍(면)	년 월부터	년 월까지	
		도(시)	군	읍(면)	년 월부터	년 월까지	
	부(父)	도(시)	군	읍(면)	년 월부터	년 월까지	
		도(시)	군	읍(면)	년 월부터	년 월까지	
		도(시)	군	읍(면)	년 월부터	년 월까지	
	모(母)	도(시)	군	읍(면)	년 월부터	년 월까지	
		도(시)	군	읍(면)	년 월부터	년 월까지	
도(시)		군	읍(면)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위 지원자는 서정대학교 농·어촌출신자 전형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대상자로서 지원자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지원자 : (인) 서정대학교 총장 귀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증번호		발급번호	

차 상 위 경 감 대 상 자 확 인 내 역 서

No	자격취득일	자격상실일	경감유형
1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임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2015 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이 증명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회원가입 후 직접 발급이 가능합니다(공인인증서 필요).

※ 이 확인서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자격확인용으로 다른 용도(대출용 등)로 사용시 공단에 법적인 책임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별지양식> 한부모가족증명서 양식(건본)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한부모가족증명서

1. 성명:
(생년월일:)

2. 세대주 성명(시설명):
(세대주와의 관계:)

3. 주소(소재지):

4. 제출용도:
(용 도)
(제출처)

5. 선정일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직인

대입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위반 주의 안내

수시모집에 합격하면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이후 전형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 관련근거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2

□ 주요내용

- 전문대학은 수시모집시 타 대학 지원 횟수에 제한이 없음(일반 대학의 수시 6회 제한과 상관없음)
- 수시모집 최초합격자 뿐만 아니라 총원합격자도 학생의 의사여부 및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정시모집 지원 금지
- 복수지원 금지
 -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 최초합격자 뿐만 아니라 총원합격자도 학생의 의사여부 및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금지
 - 전문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대학(교육대학, 산업대학 포함)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시기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교육대학, 산업대학 포함)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전문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시기에 지원할 수 없음
- 이중등록 금지
 - 모집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1개의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함.
 -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수시모집에 합격한 대학 중 1개의 대학에만 예치금을 납부해야 하며, 2개 이상의 대학에 예치금을 납부할 경우 이중등록으로 간주하여 합격 또는 입학 취소
- 복수지원위반 및 이중등록자에 대한 조치
 - 전형 종료 후 모든 대학 신입생의 지원·합격·등록상황을 전산검색하여 금지된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사실이 확인되면 입학을 무효로 함
 - 전문대학(대학,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각종학교 간에는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대학
 - 육·해·공군사관학교, 경찰대학, 한국폴리텍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학교, 한국 농업대학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정대학교(입학학사처), 031-860-52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입전형 자료 온라인 제공 안내

□ 제공개요 : 대입전형자료(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제공에 동의한 자에 한하여 대입전형 자료를 지원대학에 온라인으로 송부

□ 제공대상 : 2014년 2월 - 2021년 2월, 2022년 2월 졸업(예정)자 중 온라인제공 대상교 출신자(교육과정 등의 이유로 일부학교 제외) : 조기졸업자 및 조기졸업예정자 포함

※ 온라인제공 비동의자, 온라인제공 비대상교 출신자, 2013년 2월 졸업자 및 2013년 이전 졸업자는 학교생활기록부 제출

□ 제공 항목 : 학교생활기록부 양식의 항목 중 "신체발달상황"과 진로지도상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을 제공/ ① 인적사항 ②학적사항 ③출결사항 ④수상경력 ⑤자격증 및 인증 취득사항 ⑥창의적재량활동 ⑦특별활동상황 ⑧체험활동 ⑨교과학습발달상황 ⑩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인적사항과 출결상황 2개 항목에 대하여는 전체가 아닌 일정부분 항목만 제공

※ 인적사항 제공항목 : 학생성명, 주민등록번호, 학생사진 (3개 세부항목)(학생의 성별, 주소, 가족상황 및 특기사항 제외)

※ 출결사항 제공항목 : 수업일수, 결석일수[질병/사고/기타], 지각[질병/사고/기타], 조퇴[질병/사고/기타], 결과[질병/사고.기타] (13개 세부항목)(특기사항 제외)

□ 온라인제공 동의방법

● on-line 접수자 : 인터넷 창의 매뉴얼에 따라 동의여부 표시

● off-line 접수자 : 원서에 기재되어 있는 동의여부란에 표시

대입전형자료(검정고시) 온라인 제공 안내

□ 제공개요 : 대입전형자료(검정고시) 온라인제공에 동의한 자에 한하여 대입전형자료를 지원대학에 온라인으로 송부

□ 제공대상 : 2015년 1회차부터 2021년 2회차까지

※ [각 시도교육청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대국민서비스(www.neis.go.kr)의 검정고시 대입전형자료제공 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자료확인 및 신청”을 완료한 경우]에만 검정고시 성적이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신청하지 않을 경우 원서접수시 온라인 동의로 표시를 하였더라도 성적이 대학에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성적증명서가 제공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제공 비동의자, 본인이 신청기간내에 확인·신청을 완료하지 못한자, 2014년(2014년 포함) 이전 합격자는 성적증명서 제출

□ 제공 항목 : 합격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시과목(필수/ 선택), 성적, 합격 연월일, 총점, 평균

□ 온라인제공 동의방법

- on-line 접수자 : 인터넷 창의 매뉴얼에 따라 동의여부 표시
- off-line 접수자 : 원서에 기재되어 있는 동의여부란에 표시

2022학년도 환불안내

1. 환불신청 기한 및 시간

신청기한	2021.12.21(화) ~ 2022.2.28(월)까지(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2022.2.26(토) - 2.27(일)은 신청 가능
신청시간	09:00 ~ 17:00
환불처리	당일처리(신청완료 후 타대학 등록 가능)
등록금 환불시기	다음날 15:00시 이전(금요일 신청자는 월요일 입금)

2. 환불확인 및 환불시기

- 1) 환불확인 : 환불신청과정 중 본인 인증으로 확인합니다. 대학에서 최종 처리가 될 경우 문자가 발송됩니다.(개인정보가 외부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환불완료 후 타 대학 등록 : 환불신청이 완료(대학 최종 처리)될 경우 타 대학과의 이중등록 문제는 전혀 없으므로 다른 대학에 등록하여도 됩니다.(환불 신청을 통한 등록금만 환불신청 다음날에 입금 되는 것 이므로, 환불신청이 완료되면 이중등록 문제는 전혀 없으므로 타 대학에 등록하여도 됩니다)
- 주말에 타 대학에 등록이 필요한 경우 우리대학에 신청만 하시고 타 대학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이중등록 문제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대학에서 평일 오전에 처리하겠습니다)
- 3) 등록금 환불시기 : 다음날 15:00까지 입금하여 드립니다.(금요일 접수분은 월요일에 입금되며 공휴일 전일 신청자는 공휴일 지난 평일 오후 15:00까지 입금됩니다)
- 4) 등록금은 입학금+수업료, 학생경비, 교재비가 별도로 계좌에 입금됩니다.

3. 환불신청 방법

- 1) 환불에 관한 내용을 읽고 확인한 후에 환불신청을 클릭
- 2)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가 맞으면 핸드폰으로 인증 한 후 환불절차 진행
- 3) 환불에 관한 유의사항을 읽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을 경우 동의(미동의시 환불처리가 진행되지 않음)한 후 계좌번호 등 환불에 필요한 기초자료 등을 작성한 후에 환불신청완료하기를 클릭하면 환불신청 종료(환불신청이 완료되면 대학에서 확인 후 환불신청 완료하여 드림)

- 1) 우리대학교 또는 다른 대학교(전문대학·4년제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포함)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정시모집·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입학이 취소됩니다.
- 2) 우리대학교 또는 다른 대학교(전문대학·4년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포함)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합격한 대학 중 1개교에만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대학교 및 다른 대학교(전문대학·4년제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포함)의 정시모집·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입학이 취소됩니다.
- 3)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수시모집 등록기간에만 등록처리하며, 수시모집에 복수합격한 자는 수시모집 등록기간내에 최종 1개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합니다.(예치금 가등록을 정식등록으로 처리함)
- 4) 환불신청으로 인하여 우리대학교에는 학적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 5) 상기 1, 2, 3, 4번 항목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2021학년도 입학전형이 종료된 후 전산검색으로 인하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지원위반 사항으로 나올 경우에는 우리대학교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4. 주의사항 : 우리 대학교 등록자 중 환불 신청이 필요한 학생들은 2021.2.28(일) 이전에 환불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시합격자 중 예치금 납입 후 환불하는 학생도 동일합니다.

의문점이 있으시면 입학학사처(031-860-5222)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